

03. 용어의 정의



훈령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① “전산자료”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.

② “전산매체”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·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,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.

③ “사용자”란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.

④ “원적교”란 재취학·재입학(복학 포함)·전입학·편입학 등 학생의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재학 하였던 학교를 말한다.

법적근거

기재요령
안내

목적 등

인적·학적
사항

출결상황

수상경력

학교폭력
조치상황
관리
(1학년)

학교폭력
조치상황
관리
(2·3학년)

창의적
체험활동
상황

교과학습
발달상황

자유학기
활동상황

독서활동
상황

행동특성 및
종합의견

기타
사항 등

참고자료